

의안번호	2201305
의 퇴 인	박충권 의원
회 답 일	2024. 7. 10.
추 계 번호	24B15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9 (앱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3항~제5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앱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을 평가(이하 “보안성 평가”라 한다)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성 평가에 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제3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앱마켓사업의 경쟁 촉진을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이용경로, 이용방식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앱마켓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제5항)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2조의9 (앱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제3항~제5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 평가 등(안 제22조의9제3항~제5항 신설)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보안성 평가를 실시하고, 앱 마켓사업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할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관한 보안성 평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보안성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기 이전으로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추계 곤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관한 보안성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
 - － 향후 보안성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 결과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사업에서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고, 앱 마켓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재하여 앱 마켓사업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향후 사업량 및 사업 단가를 추정할 수 없고, 협의회 규모 및 운영 방식 등을 알 수 없어 관련 추가재정소요 추계 불가
 - 참고로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앱마켓으로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윈스토어, 갤럭시스토어가 있으며, 주요 앱마켓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주요 앱마켓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윈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록앱 수 ¹⁾	약 355만개	약 164만개	약 22만개	약 13만개
거래액 ²⁾	50,995	12,741	11,119	—
점유율 ²⁾	68%	17%	15%	—
기반 OS	안드로이드	iOS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서비스 제공 국가	약 190여개국	약 180여개국	1개국	약 190여개국

주: 1) '22년 3분기 기준(출처: Statista 및 각 사 제공)

2) 거래액과 점유율은 '22년 기준(출처: 모바일인덱스, 갤럭시스토어는 미산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